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083
----------	-------

발의연월일 : 2025. 6. 25.

발 의 자 : 이해민 · 차규근 · 황운하
서왕진 · 김선민 · 신장식
김우영 · 정춘생 · 복기왕
민형배 · 김준형 · 강경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기 종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대통령 선거 후 새 정부 출범 시기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잔여 임기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공공기관 운영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며, 국정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 추진력이 가장 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장들이 전 정권 인사로 구성되었을 경우 정책 이행에 혼선이 생기거나, 국정과제의 실질적 추진력이 저해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현행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여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 경영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는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한 경우 후임 임명권자의 인사권 행사 시점까지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 종료 또는 인사권 행사 시점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임기) ① (생략) <u><신설></u>	제28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는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한 경우 후임 임명권자의 인사권 행사 시점까지로 한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 -----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제3항----- ----- ----- -----. ----- ----- -----.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u><삭제></u>
<u><신설></u>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

<u>종료 또는 인사권 행사 시점까 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 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u>
